

인천광역시서구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

<http://www.seo.incheon.kr/>

선	기관위원장
람	

제1342호 2018. 3. 5(월)

차 례

조 례

-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553호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----- 1
-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554호 인천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
----- 4
-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555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
조례 ----- 6

고 시

-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38호 주택건설사업계획(변경)승인 고시 ----- 10

고 시

-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394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
예고 ----- 11

에서 지원이 가능하며,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.

1. 단독경보형감지기, 소화기 등 설치
2. 전기, 가스 등 재난발생 가능성이 있는 위험 노후시설의 점검 및 차단기, 안전밸브 등 안전부품 설치·교체
3. 그 밖에 인천광역시 서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4조(지원신청) ①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재난취약계층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재난취약계층 지원 신청은 지원대상자 본인이나 친족 또는 통장이 할 수 있다. 또한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원대상자를 직권으로 추천할 수 있다.

제5조(지원결정 등) ① 신청서를 받은 동장은 지원대상자의 결정과 지원을 위하여 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자산상황, 건강상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.

② 동장은 지원대상자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구청장에게 추천하고 구청장이 최종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. 다만, 지원결정 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순서를 정하여 동장에게 통보한다.

제6조(개선의 위탁)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전기, 가스, 소방 등의 개선을 전문 점검기관 및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.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.

제7조(지원예산 확보) 구청장은 매년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.

제8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말한다.

제8조제3항 중 “2년으로 하고,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.”를 “3년으로 하되, 한 차례만 1년 연임할 수 있다.”로 한다.

제10조제2항 중 “행·재정적”을 “행정·재정적”으로 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제8조제3항의 개정된 임기는 이 조례 시행 후 새로 선임된 센터장부터 적용한다.

제6조제3호 중 “타인”을 “다른 사람”으로 한다.

제7조제1항 중 “수강료”를 “사용료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의 반환기준은 사용일수를 제외하고 일할계산으로 반환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액 반환한다.

1. 천재지변, 그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도서관의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
2. 도서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·정지되었을 경우

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및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단체의 시설사용료는 전액 감면한다.

같은 조 제4항은 삭제한다.

제10조의제4항 중 “담당과장”를 “담당 과장”으로, “중에서”를 “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”로, “자”를 “사람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해촉”을 “위촉 해제”로 하며, 같은 항 제3호 중 “저해”를 “방해”로 한다.

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인천광역시 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3호 중 “신체장애자용”을 “신체장애인용”으로 한다.

② 인천광역시 서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장애자용”을 “장애인용”으로 한다.

[별표 1]

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

명 칭	위 치
검암도서관	인천광역시 서구 검암로20번길 20(검암동)
석남도서관	인천광역시 서구 서달로137번길 6-12(석남동)
검단도서관	인천광역시 서구 완정로92번길 18(마전동)
심곡도서관	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로 31(심곡동)
신석도서관	인천광역시 서구 염곡로 299(석남동)

[별표 2]

수수료 및 사용료

1. 자료복사 수수료

구 분	규 격	금 액		비 고
		후백	칼라	
자료복사 및 통신정보 인쇄료	A4	40원	80원	1매당
	B4	50원	100원	

2. 시설사용료

구 분	사용시간(1일 1회)	금액(원)	비 고
어울림터(소공연장) 및 다목적실	2시간 이내	20,000	① 사용금액 : 냉온방 및 방송장비 등 장비사용료 포함 ② 사용가능 시간대: 09:00 ~ 18:00(휴관일 제 외) ③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
	2시간 초과	시간당 10,000원씩 가산	

3. 사물함 사용료 : 월 3,000원

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18-38호

주택건설사업계획(변경)승인 고시

인천 서구 마전동 996-1 외 1필지 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 『주택법』 제15조(사업계획의 승인) 제4항 규정에 따라 변경내용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15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8. 3. 5.

인천광역시 서구청장

1. 사업명 : 마전동 우방아이유셀 공동주택 신축
2. 사업주체 : 에스엠상선(주) (대표 김철봉)
3. 사업시행 및 면적규모
 - 가. 위치 :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996-1 외 1필지
 - 나. 대지면적 : 18,276.9m²
 - 다. 사업규모 : 연면적 59,316.3816m² (지하3층~지상15층)
 - 라. 용도 : 공동주택(아파트) 5개동 380세대 및 부대·복리시설
 - 마. 변경내용
 - 사업주체 및 시공자 변경
 - 기존 : (주)우방건설산업 대표자 강필수
 - 변경 : 에스엠상선(주) 대표자 김철봉
4. 사업기간 : 2016. 03. 09. ~ 2018. 06. 29.
5.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에 따른 의제처리사항
 - 가. 건축법 제16조에 따른 건축허가사항 변경허가

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8-394호

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사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8. 3. 5.

인천광역시 서구청장

1. 개정이유

-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효과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필요인력을 증원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정원의 총수 (안 제2조)
 - 999명 ⇒ 1,042명 (증 43명)
-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 (안 별표 3)
 - 일 반 직 : 995명 ⇒ 1,038명 (증 43명)
 - 5급이하 : 988명 ⇒ 1,031명 (증 43명)
- ※ 추가소요 인건비 : 1,952,153천원 (내역 별첨)

3. 의견제출

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나 개인은 2018년 3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(참조 : 기획예산실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전화 560-4042, 팩스 560-2703)

-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- 제출자의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, 전화번호

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1. 제안이유

-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효과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필요인력을 증원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정원의 총수 (안 제2조)
 - 999명 ⇒ 1,042명 (증 43명)
-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 (안 별표 3)
 - 일 반 직 : 995명 ⇒ 1,038명 (증 43명)
 - 5급이하 : 988명 ⇒ 1,031명 (증 43명)
- ※ 추가소요 인건비 : 1,952,153천원 (내역 별첨)

3. 참고사항

- 가. 개 정 안 : “별지 참조”
- 나. 신·구조문대비표 : “별지 참조”
- 다. 예산수반사항 : “별지 비용추계서 참조”
- 라. 관계 법령 발취 : “해당 없음”

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

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999명”을 “1,042명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집행기관의 정원: 1,023명

제2조제2호 중 “정원 :”을 “정원:”으로 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지방공무원종류별”을 “지방공무원 종류별”로 한다.

제4조 본문 중 “기관별 직급별”을 “기관별·직급별”로 한다.

제5조 중 “기관별 직렬별”을 “기관별·직렬별”로 한다.

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정원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현원 해소 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.

〔별표 3〕

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(제4조 관련)

기관별 직급별	총 계	본 청	의회사무 기 구	직속기관	출장소	동
총 계	<u>1,042</u>	-				
정무직 계	1	-				
구청장	1	1				
일반직 계	<u>1,038</u>	-				
2급	1	1				
4급	6	4	1	1		
5급	<u>63</u>	<u>33</u>	2	6	1	21
6급 이하 계	<u>968</u>	-				
연구직 계	1	-				
연구사	1	-				
별정직 계	2	-				
5급 상당	-	-				
6급 상당 이하 계	2	-				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원의 총수) 인천광역시 서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 (이하 “정원”이라 한다)의 총수 <u>999명</u> 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 분한다. 1. 집행기관의 정원 : 980명 2.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: 19명	제2조(정원의 총수) ----- ----- ----- <u>1,042명</u> ----- -----. 1. 집행기관의 정원: 1,023명 2. ----- 정원: -----
제3조(정원채정기준) ① 지방공무 원종류별 정원채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. ② (생 략)	제3조(정원채정기준) ① 지방공무 원 종류별 ----- -----. ② (현행과 같음)
제4조(직급별 정원) 정원관리 기 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. 다만,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 로 정한다.	제4조(직급별 정원) ----- 기관 별 · 직급별 ----- ---. ----- -----.
제5조(직렬별 정원) 정원관리 기 관별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.	제5조(직렬별 정원) ----- 기관 별 · 직렬별 ----- -----.

[붙임 2]

비용소요 추계서

(단위 : 원, 명, 월)

구분	소요비용	산출근거						비고
		내역	단가	인원	비율 등	월(회)수	계	
총계	1,952,153,698							
1. 인건비	1,730,236,885							
가. 기본급	1,386,123,000	○ 4급(연봉제)	80,411,000					
		○ 5급(연봉제)	55,171,200	3		12	165,513,600	
		○ 6급(24호봉)	3,840,720	15		12	691,329,600	
		○ 7급(14호봉)	2,916,400			12	0	
		○ 8급(8호봉)	2,176,040	8		12	208,899,840	
		○ 9급(3호봉)	1,570,490	17		12	320,379,960	
							0	
나. 상여금	85,477,585	○ 정근수당	1,386,123,000	43	0.08	2	85,477,585	90%평균
다. 정액수당	258,636,300							
1)가족수당	12,384,000	○ 배우자	40,000	16	0.78	12	5,990,400	
		○ 존비속	20,000	18	1.48	12	6,393,600	
2)정근수당가산금	40,560,000	○ 25년 이상	130,000	6		12	9,360,000	
		○ 20년~25년미만	110,000	10		12	13,200,000	
		○ 15년~20년미만	80,000	4		12	3,840,000	
		○ 10년~15년미만	60,000	3		12	2,160,000	
		○ 5년~10년미만	50,000	20		12	12,000,000	
3) 정액급식비	67,080,000	○ 일반직	130,000	43		12	67,080,000	
4) 명절휴가비	138,612,300	○ 명절휴가	1,386,123,000		0.05	2	138,612,300	
2. 직무수행경비	72,000,000							
가. 직책급업무추진비	3,600,000	○ 4급	350,000			12	0	
		○ 5급	100,000	3		12	3,600,000	
나. 직급보조비	68,400,000	○ 4급	400,000			12	0	
		○ 5급	250,000	3		12	9,000,000	
		○ 6급	155,000	15		12	27,900,000	
		○ 7급	140,000			12	0	
		○ 8급	105,000	8		12	10,080,000	
		○ 9급	105,000	17		12	21,420,000	
3. 포상금	149,916,813							
가. 성과상여금	149,916,813	○ 5급(연봉제)	4,597,600	3	1.25	1	17,241,000	A등급
		○ 5급(임기제)			1.25	1	5,529,000	A등급
		○ 6급(24호봉)	3,840,720	15	1.25	1	72,013,500	A등급
		○ 7급(14호봉)	2,916,400		1.25	1		A등급
		○ 8급(8호봉)	2,176,040	8	1.25	1	21,760,400	A등급
		○ 9급(3호봉)	1,570,490	17	1.25	1	33,372,913	A등급

3) 수당 중 위험근무, 대우공무원, 관리업무, 특수업무, 민원업무, 전산업무, 장려, 의회사무, 의료업무, 동근무, 사회복지업무, 초과근무 등 제수당은 개인별 격차가 광범위하고 산발적이므로 추계하지 아니함

